[별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8. 1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현 황 ·····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7

2.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10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16

Ⅳ. 조치사항 ····· 2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대폭 확대**

※ 전국(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수 9,652건, 사업 총예산 약 5조 400억원('16년 기준)[1]

□ 지자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국가사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17.4.11, 국회제출)

○ 특히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당해 지자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부패 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과제 선정·추진 사유

❍ 제1,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18.4.18.)에서 공공부분과 연계된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정책** 추진의 중요성 대두

- 특히,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 하에서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 필요

1) '17년도 발행된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Ⅰ」(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2. 추진경과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조사**('18.4~5월)

○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실시('18.6월)

○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18.6~8월)

※ 전국 243개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규정 및 민간위탁 실태 조사·분석

○ 개선(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실시('18.7~8월)

※ 학계·법률·실무 전문가(7명)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

○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18.9~10월)

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단,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의 위탁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함

- 이에 따라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총 3곳)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미제정

< 민간위탁 기본조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로, 통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등 민간위탁 절차, 지휘·감독 등 민간위탁 전반에 걸친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ex>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실제 명칭은 다양

○ 그 외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시설의 민간위탁을 규정

※ 예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상 체육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등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전국]

□ 총 괄

○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652건**(광역 1,005건, 기초 8,647건), 약 **5조4백억 규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2)]

<전국 지자체(233개) 민간위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사업 총 예산	사업별 평균예산
전 국	9,652	5,042,669	522
특·광역시	289	213,799	739
도	716	1,106,407	1,545
시	3,161	1,656,963	524
군	2,442	695,486	290
구	3,044	1,342,511	441

□ 사업 유형별 현황

○ 민간위탁사업 유형별로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3백억), 환경보호분야 30.6%(2조24백억), 문화·분야 7.7%(5천6백억)로 높은 비중 차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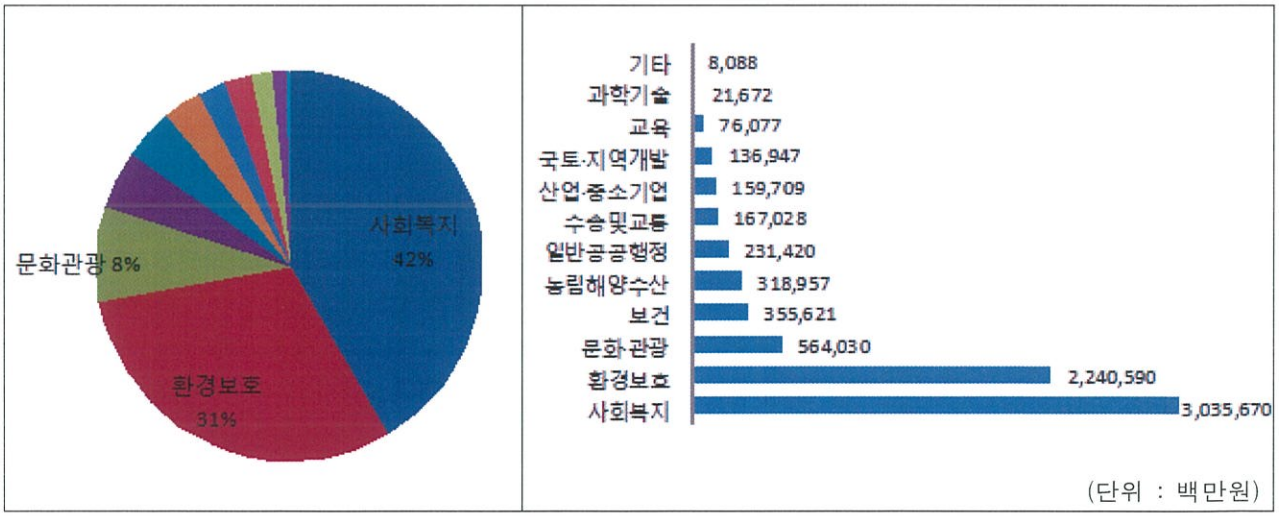

2)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Ⅰ」(20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단 부산, 울산, 충남, 경기도 광주시/양주시, 경북 군위군/영덕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총 10개 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현황에서 제외.

3)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Ⅰ」(20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

3.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업무 흐름도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은 크게 **민간위탁 준비 단계 - 진행 단계 - 이후(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 민간위탁 준비 단계(①~③) : 적정성 사전 검토, 지방의회 동의 등
- 민간위탁 진행 단계(④~⑤) :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등
- 민간위탁 이후 단계(⑥~⑦) :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 재계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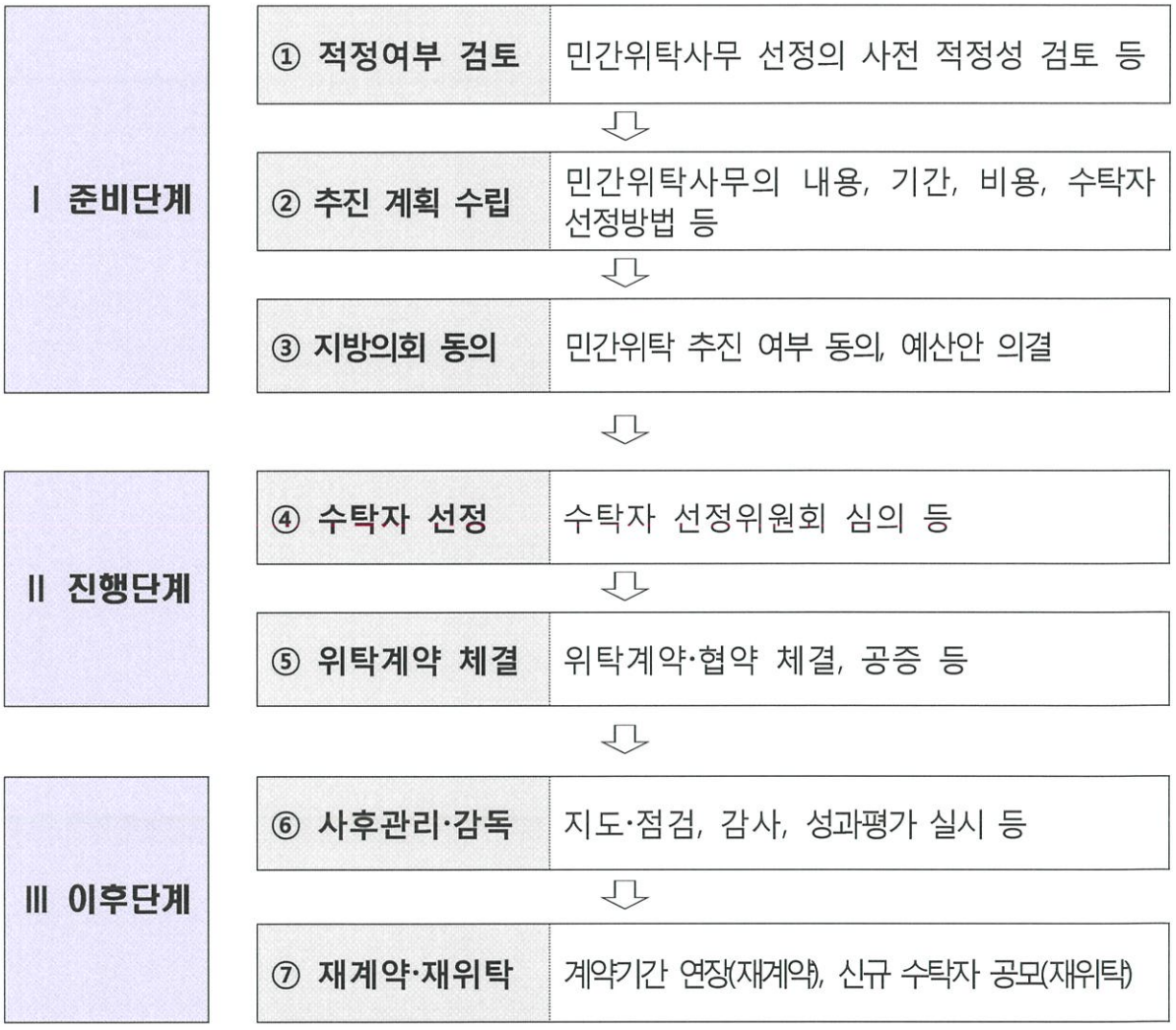

※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자치부, 2004) 재구성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 약]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위탁준비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1-1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1-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1-2 민간의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 미흡		1-2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위탁진행	**2.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발생**	⇨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1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		2-1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2-2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 등에 따른 심의의 불공정 문제		2-2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2-3 이의신청절차 부재로 당사자의 행정절차 참여 보장에 미흡		2-3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후관리	**3.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	**3.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3-1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3-1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3-2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실		3-2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3-2 위탁 취소 근거의 부재로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미흡		3-3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2.6%(225곳) 임

※ A시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개선 계획」 수립('14. 3.), 기존의 민간위탁 사업을 일반용역 등으로 사업관리방식을 전환하였음

※ B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18년도 전체 73개 민간위탁사무 중 11개 사무가 민간위탁 부적합 사무로 판정

<사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기준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없음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있음
243	**225(92.6%)**	18(7.4%)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에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0.9%**(221곳) 임

※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지방의회 동의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32곳

<지방의회 동의안 구체화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규정 없음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규정 있음
243	**221(90.9%)**	22(9.1%)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민간위탁 부적합 관련 사례

✓ △△**시**는 K복합문화시설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한 후, 대표의 채용비리 논란,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로 **시 직영체제로 전환**['18.2월 언론보도]

✓ **A시**의 경우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수립('14. 3.)·시행을 통해 **민간위탁 부적합 사무**에 대해 **관리 방식을 전환**하였음

위탁사무 명	전환방식
상하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등	일반용역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 교육지원	보조사업
○○○공원 주차장 운영 등	사용수익허가

✓ **B도**의 경우, '18년도 민간위탁사무 총 73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11개 사무가 민간위탁 부적합** 사업으로 분석

-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역관광안내소 운영 등 10개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전환 필요

('18.7. 「B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연구 용역」 자료 재구성,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에 반영

○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성성 검토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조례 개선예시① :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조례 개선예시② :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현 행	개선안(예시)
	제○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절차가 중요하나,

- 수탁자 **선정기준·배점** 등의 **사전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의 **85.2%**(207곳)이고,

<선정기준 등 사전 공개 관련 조례 현황>

합계(개)	사전공개 규정 없음	사전공개 규정 있음
243	**207(85.2%)**	36(14.8%)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97.1%**(236곳)에 달하는 등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시 수탁자 선정과정에 수탁기관과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사례 지속적 발생

< 이해충돌방지장치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이해충돌방지장치 완비
243	**236(97.1%)**	7(2.9%)

* 이해충돌방지장치 완비 여부는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아울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87.2%(212곳)이며,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54.3%(132곳)이나 됨

○ 특히, 수탁자 **선정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2곳(대구, 광주) 뿐**인 실정으로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수탁자 선정 관련 불공정 논란 사례

◈ 민간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논란이 된 사례

✓ **ㅇㅇ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a씨가 수탁기관 대표인 b씨와 '특수 이해관계'라는 지적(수탁자 b씨는 심의위원 a씨의 복지관이 속한 재단에서 '00~'06년 상임이사를'09~'10년 대표이사 역임)['17.9월 언론보도]

✓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협회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심사위원 가운데에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복지관 운영위원이 2명이나 포함['18.3월 언론보도]

✓ **▲▲시 □□구 ▷▷체육센터** 운영 민간 수탁자 모집에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응모,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셀프위탁' 논란 ['17.8월 언론보도]

< 참 고 >

◈ 수탁자 선정위원회

▸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기능 등 운영방식은 다양

▸ 대개 위탁사유 발생 시 구성·운영 됨

지자체 명	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선정위원회 규정 없음

□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에 반영

○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규정 마련

○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 해촉)** 마련

※ 아울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문화

○ 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조례 개선예시① :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② :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조(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분의 1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 **제○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현 행	개선안(예시)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③ : 이의신청 절차 마련】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관은 제◎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조제▽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조(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75.3%**(183곳)에 달함

※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60곳 중 **12곳**은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

< 사후 성과평가 실시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성과평가 미실시	성과평가 실시
243	**183(75.3%)**	60(24.7%)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 A시의 경우 '17년도 전체 민간위탁사무 350개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 등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87.7%(307건)에 달함

재계약 등 관련 현황

✓ **A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

- 전체 민간위탁사무 중 **재위탁**(수탁자를 달리하여 연속위탁)하거나 **재계약**(기존 동일 수탁자에게 연속위탁)하는 비율이 **87.7%**에 달함

('17.7, 기준)

구 분	신규위탁	연속위탁	
		재위탁	재계약
350개 (100%)	43개 (12.3%)	**140개 (40.0%)**	**167개 (47.7%)**

('17.12. 「A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자료 참고)

-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시, 주요 검토기준으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65.8%**(160곳)이고,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재계약 시 성과평가 미반영	재계약 시 성과평가 반영
243	**160(65.8%)**	83(34.2%)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보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56.0%**(136곳)에 달함

<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없음	재계약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있음
243	**136(56.0%)**	107(44.0%)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관련 판례]**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나, 이러한 수탁자의 중요한 의무위반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63.0%**(153곳)에 달함

< 위탁 취소사유 명시 관련 조례 현황 >

합계(개)	위탁 취소사유 없음	위탁 취소사유 명시
243	**153(63.0%)**	90(37.0%)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 성과평가 부실 등 사후 관리·감독 미흡 사례

✓ △△시의 경우 성과평가를 의무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위탁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2016년 △△시 민간위탁사업은 총 227건으로, 이 중 **65.3%(149건)가 성과평가 미실시**['17.7월 언론보도]

✓ '13~'15년도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재계약 총 250건을 분석한 결과, **평가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가 **75.6%**(189건)에 달함('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청은 전년도 운영수익을 횡령한 수탁업체와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 민선 지자체장은 수탁업체인 상인회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 상인회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 ['16.2월 언론보도]

✓ **민간위탁 계약 취소 관련 사례**

- '13~'15년도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 **계약 해지 사례는 8건** 뿐('1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A시**의 경우,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15년도에 91건, '16년도에 83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계약해지 및 재계약 배제** 사례는 **0건** ('17.12, 「A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자료 참고)

□ 개선 방안

➪ 이하 개선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에 반영

○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

※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위탁사업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

【조례 개선예시① : 사후 성과평가 실시】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 개선예시② :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재계약)**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조례 개선예시③ : 위탁 취소사유 구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현 행	개선안(예시)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년 이상 징역형 및 ◎◎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 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

□ 조치기한 : 2019. 12. 31.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대상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민간위탁 기본조례
2.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	